

1. 개정이유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했음. 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시·격리 업무 협조가 중요했으나 공문, fax, 수기 등의 전달로 업무부담이 컸음.

이에, 검역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 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항) 시 검역정보 시스템을 통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u> <u>1. 법 제15조제1항제1호</u> <u>2. 법 제15조제1항제2호</u>